

제2923호  
2022. 5.13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 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영 혜  
전화: 3396-4951  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고 시

선	기관의장
람	

# 구 보

- 고 시  
제2022-40호 :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 ..... 2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  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 
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1 / FAX.(02)3396-9022/3  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  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 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40호

## 주택건설사업자 위반업체 행정처분 고시

「주택법」 제4조 및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5월 12일  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처분일자 : 2022. 5. 11.
2. 처분근거 : 주택법 시행령 제18조【별표1】
3. 행정처분내역

등록번호	업 체 명	대표자	주 소	처분사유	처분내용
서울-주택 2019-0212	(주)메이저윈	김○태	중구 다산로12길 11 (신당동)	연보고현황 미제출 (주택법 제10조 위반)	영업정지 1개월 (2022.5.11.~6.10.)
서울-주택 2017-0248	(주)제이홈타운씨앤디	장○식	중구 을지로38길 9-4 (광희동1가)	실적제출시 기술자미 보유 (주택법 제4조 위반)	영업정지 3개월 (2022.5.11.~8.10.)

4. 안내사항 :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주택과(☎02-3396-57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는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의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, 또한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을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, 「행정소송법」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